

한국 바둑 규칙 개정 (신·구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2조 바둑의 용구</p> <p>제1항 바둑판 : 바둑판에는 가로·세로 19줄의 평행선이 있으며, 선으로 이루어진 361개의 교차점이 있다.</p> <p>제2항 바둑돌 : 바둑돌은 흑돌 181개와 백돌 180개가 표준이다.</p> <p>제3항 바둑통</p> <p>1. 바둑돌을 담는 도구이다.</p> <p>2. 통의 뚜껑은 잡은 돌을 보관하는 데 사용한다.</p>	삭제	<경기규정> 제 1~3조 반복 내용 삭제
<p>제3조 바둑돌 놓기(착점)</p> <p>3. 반상에 돌이 닿은 곳을 착점으로 한다. 만약 돌이 닿은 곳이 교차점이 아닐 경우 돌이 닿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교차점을 착점으로 한다.</p>	<p>제2조 바둑돌 놓기(착점)</p> <p>3. 반상에 돌이 닿는 곳을 착점으로 한다.</p>	1,2,4 생략 3. 모호한 표현 삭제
<p>제11조 끝맺기</p> <p>연속넘김(pass)</p> <p>더 이상 돌 곳이 없다고 여기면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예, “계속 두세요.” 등). 이때 상대방이 두면 경기는 계속되지만, 상대방 역시 두는 순번을 넘기면 돌의 사활을 해당 부분만 분리해서 다룬다. 이후 더 돌 곳이 없으면 경기를 끝맺는다.</p>	<p>제10조 끝맺기</p> <p>연속넘김(pass)</p> <p>더 이상 돌 곳이 없다고 여기면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이때 상대방이 두면 경기는 계속되지만, 상대방 역시 두는 순번을 넘기면 돌의 사활을 해당 부분만 분리해서 다룬다. 이후 더 돌 곳이 없으면 경기를 끝맺는다.</p>	경기 규정 10조에 세부내역 명시

바둑 경기 규정 개정 (신·구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7조 (전자기기의 휴대 및 사용 제한 등)</p> <p>⑤ 본 규정 제3장에서 정한 경기구성원(선수, 심판위원, 경기위원, 기록원, 계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기 중 전자기기의 휴대 및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p> <p>1. 선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경기 중 전자기기의 휴대 및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p> <p>가. 예선 경기에서는 전자기기를 몸에 소지할 수 없고 사용을 금지한다.</p> <p>나. 본선 이상 경기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되는 경기에서는 전자기기의 휴대 및 사용이 금지되며, 운영본부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전자기기는 심판위원의 경기 종료 선언까지 반환하지 않는다.</p> <p>다. 의료 목적의 전자기기(예 : 보청기 등)의 휴대 및 사용은 예외로 한다.</p> <p>라. 운영본부는 경기 방식에 따라 위 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p> <p>2. 심판위원과 경기위원은 경기 중 경기장 내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선수와 접촉이 가능한 경기 부속시설의 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p> <p>3. 생략</p> <p>⑧ 선수는 경기 중 개인 객실과 소속팀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는 경기 부속시설로 이동 또는 출입할 수 없다. 단, 운영본부가 이동 및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심판위원의 동행 하에 가능하다.</p>	<p>제7조 (전자기기의 휴대 및 사용 제한 등)</p> <p>⑤ 본 규정 제3장에서 정한 경기구성원(선수, 심판, 경기위원, 기록원, 계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경기 중 전자기기의 휴대 및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p> <p>1. 선수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경기 중 전자기기의 휴대 및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다.</p> <p>가. 선수는 전자기기의 휴대 및 사용이 금지되며, 운영본부의 지시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고고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전자기기는 경기 종료까지 반환하지 않는다.</p> <p>나. 의료 목적의 전자기기(예 : 보청기 등)의 휴대 및 사용은 예외로 한다.</p> <p>다. 운영본부는 경기 방식에 따라 위 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p> <p>2. 심판과 경기위원은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전자기기만 휴대 및 사용할 수 있다.</p> <p>3. 생략</p> <p>⑧ 선수는 경기 중 개인 객실과 소속팀 관계자와 접촉할 수 있는 경기 부속시설로 이동 또는 출입할 수 없다. 단, 운영본부가 이동 및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심판이나 경기위원의 동행 하에 가능하다.</p>	<p>⑤, ⑧ 세부내용 수정 이하 항목 생략</p>
<p>제10조 (경기 종료)</p> <p>② 양 선수가 차례로 착수를 포기하면 대국 종료로 간주하여 종국이 된다.</p>	<p>제10조 (경기 종료)</p> <p>② 양 선수가 차례로 착수를 포기하면 대국 종료로 간주하여 종국이 된다. (착수 포기 발언이나 계시기를 누르는 행위를 착수 포기로 간주한다)</p>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 11 조 (심판위원의 의무 및 권한)</p> <p>③ 다음 각 목의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수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감독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선수가 화장실에 갈 경우 4. 계시기가 오작동하는 경우 5. 본 규정 제7조의 위반이 적발된 경우 6. 기타 경기 진행에 방해 요소가 발생한 경우 <p>④ 심판위원은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분쟁 사항에 대해서도 판정할 수 있다.</p> <p>⑤ 심판위원은 경기 시작 전 각 선수를 대상으로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기기를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p>	<p>제 11 조 (심판위원의 의무 및 권한)</p> <p>③ 심판은 경기 시작 시간에 정확히 대국 개시를 선언한다. 단, 개회식 등의 행사로 인해 대국 시작 시간이 지연될 경우 선수에게 대국 시작 시간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p> <p>④ 심판은 다음 각 목의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를 중단시키며, 바둑판 덮개를 사용하여 바둑판을 가리고 신속히 판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수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감독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3. 계시기가 오작동하는 경우 4. 본 규정 제7조의 위반이 적발된 경우 5. 기타 경기 진행에 방해 요소가 발생한 경우 <p>⑤ 심판은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분쟁 사항에 대해서도 판정할 수 있다.</p> <p>⑥ 심판은 분쟁으로 인한 판정 발생 시 선수와 감독, 경기구성원에게 판정 결과를 신속·명확하게 한다.</p>	<p>①~②항 생략 ③,⑤,⑥항 내용추가 ④ 바둑판 덮개 사용 문구 추가</p>
<p>제 13 조 (선수의 의무와 권리)</p> <p>⑥ 화장실 사용에 관련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초읽기 시에는 착점 후 일시정지를 누르고 가며, 단 1번만 가능하다. 5. 상대 선수가 자리를 비웠을 때 착점한 경우 상대 선수에게 착점한 곳을 알려줘야 한다. 6. 제한시간이 5분 미만일 때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이석하고 미처 자리로 돌아오기 전에 이석한 대국자의 시간이 초읽기에 진입할 경우 일시정지한다. 그리고 이석한 대국자는 초읽기 시에 자리를 한번 이탈한 것으로 간주한다. <p>⑦ 계시기 사용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수는 착점한 후 착점한 손으로 계시기를 누른다. 2. 돌을 따내는 경우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 	<p>제 13 조 (선수의 의무와 권리)</p> <p>⑥ 화장실 사용에 관련해서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경기 중 일시정지는 단 1번만 가능하다. 5. 자리를 비운 사이 상대 선수가 착점한 경우 상대 선수에게 착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수는 착점한 곳을 알려줘야 한다. <p>⑦ 선수는 경기에서 고의 패배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p>	<p>①~⑤,⑧~⑩ 생략 ⑥ 1~3항 생략 4항 세부 내용 수정 5,6항 삭제 ⑦ 세부 내용 수정</p>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제 14 조 (선수의 계시기 사용) 선수들은 착점 후 계시기를 즉시 정확히 눌러야 한다. 1. 선수는 착점한 후 착점한 손으로 즉시 계시기를 누른다. 2. 돌을 따내는 경우 일시정지를 누를 수 있다. 3. 상대선수가 계시기를 누른 이후 착점을 해야 한다. 4. 착점하지 않고 계시기를 누르는 경우 착점포기로 간주한다.</p>	<p>제 14 조 (선수의 계시기 사용) ① 선수는 착점한 후 착점한 손으로 즉시 계시기를 누른다. ② 돌을 따내는 경우 일시정지를 누를 수 있다. ③ 상대 선수가 계시기를 누른 이후 착점을 해야 한다. ④ 착점하지 않고 계시기를 누르면 착점 포기로 간주한다.</p>	세부 내용 수정
<p>제4장 '경고와 반칙' → '벌칙' 변경 기존 제17조(경고) 전체 삭제 기존 제18조(반칙) 전체 삭제</p> <p>제3장 경기구성원 제16조(이의 제기)를 '제4장 벌칙'으로 이동</p>	<p>제 17조 (주의) 심판은 선수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면 주의를 줄 수 있다. 1. 제7조 제5항 제1호 제가목에 따라 선수가 제출한 전 자기기에서 소리나 진동이 발생한 경우 2. 제13조 제6항(화장실 사용)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계시기 사용)를 위반한 경우 4.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말이나 행동(예 : 콧노래 부르기, 부채·호두알 등으로 소리를 내는 행위, 바둑 돌을 잘그락거리며 소리를 내는 행위 등) 5. 선수의 이의제기가 잘못된 경우 6. 계시기에 손을 올려놓는 경우나, 착점한 손이 아닌 다른 손으로 계시기를 누르는 경우 7. 선수가 고의로 대국을 지연시키는 경우(경기 중 고의 착점포기 등) 8. 기타 심판이 판단할 때 경기에 방해되는 행위</p> <p>제 18조 (경고) 심판은 선수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 경고를 선언하고 벌점 2집을 부여한다. 1. 착점 중 돌을 한 칸 이상 밀면서 두는 경우 2. 착점 중 돌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동시키거나 집어 올린 경우 3. 착점 중 돌이 밀린 상태로 계시기를 누른 경우 4. 착점 후 계시기를 누르고 사석을 들어낸 경우(필요시, 심판은 시간을 조정한다)</p>	'제 17조 주의' '제 18조 경고' '제 19조 반칙'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5. 상대의 사석을 만지거나 상대 선수에게 사석을 돌려주는 경우 6. 사석을 통의 뚜껑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7. 주의가 2회 누적된 경우</p> <p>② 심판은 반칙행위자의 돌 2점을 상대 선수에게 전달하고 기록지에 기록한다.</p> <p>제 19 조 (반칙)</p> <p>① 심판은 선수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없이 반칙패를 선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착수 교대의 원칙을 어긴 경우 2. 따낼 수 없는 돌을 들어낸 경우 3. 반상에서 들어낼 돌을 놓아둔 경우 4. 착수 금지 점에 둔 경우 5. 팻감을 쓰지 않고 바로 패를 따낸 경우 6. 경기 중 선수가 제3자의 도움을 받은 경우 7. 제13조 제8항(부정행위)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8. 경기 종료 전 계시기를 끈 경우 9. 경고가 2회 누적된 경우 <p>② 반칙을 했을 경우 반칙패 적용은 증거가 있는 경우 대국 종료 전까지 가능하다. 단, 증거가 없는 경우는 다음 착수 시점까지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p> <p>③ 본 규정 제7조(전자기기의 휴대 및 소지 등)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수의 제5항 제1호, 제8항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를 반칙패로 처리하고, 소속기사 내규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2. 제9항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경기 라운드의 팀 성적 전체를 반칙패로 처리하고, 해당 대회의 운영 규칙(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3.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대국장 내에서 적발된 경우(가방 등에 소지), 해당 경기를 반칙패로 처리한다.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p>4. 외국바둑협회 소속된 선수와 팀 관계자의 징계는 해당 외국바둑협회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단, 위반이 적발된 선수와 팀 관계자는 본원 주최·주관 대회에 1년~3년간 출전 또는 참여할 수 없다.</p> <p>5. 제7조 위반에 대한 반칙패 적용은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 경기 종료 전까지 가능하다. 그 후 적발된 경우에는 소속기사 내규에 따른 징계 처분만 가능하다.</p>	
<p>제 19조 (이의 제기) 이의 제기는 선수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p> <p>1. 착수 교대의 원칙을 어긴 경우 2. 착수 금지 지역에 둔 경우 3. 팻감을 쓰지 않고 바로 패를 따낸 경우 4. 기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p>	<p>제 20 조 (이의 제기) ① 이의 제기는 선수와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p> <p>1.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2. 기타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p> <p>② 감독의 이의 제기가 잘못된 경우 해당 라운드의 감독 이의제기권은 소멸된다.</p>	19조→20조 변경
<p>제 21조(기타)</p> <p>② 바둑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돌이 바둑판에 닿거나 돌을 잡은 손이 닿으면 착점이다.</p> <p>1. 바둑판에 닿은 돌을 밀어서 착점할 경우, 민 정도에 따라 심판이 판정한다. 2. 착점 중 돌을 떨어뜨린 경우, 착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훼손 정도에 따라 심판이 판정한다.</p> <p>③ 바둑판에 놓인 돌의 위치가 착점한 자리에서 이동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심판위원이 판정한다.</p> <p>1. 본래 자리로 이동 2. 옮겨진 자리에서 진행 3. 재대국 또는 양자패</p> <p>④ 바둑판에 놓인 돌이 훼손된 경우</p> <p>1. 원 상태로 복구 2. 훼손 정도에 따라 판정</p> <p>⑤ 무승부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당일 재대국을 통해 승부를 결정한다. 재대국의 제한시간은 각 대국자의 남은 시간으로 한다.</p>	<p>제 21조(기타)</p> <p>② 바둑규칙 제3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돌이 바둑판에 닿거나 돌을 잡은 손이 닿으면 착점이다.</p> <p>1. 착점 행위는 바둑판에 돌이 닿은 이후 계시기를 누르기까지를 포함한다. 2. 착점 중 돌을 떨어뜨린 경우, 착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③ 바둑판에 놓인 돌의 위치가 훼손되거나 이동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심판위원이 판정한다.</p> <p>1. 원 상태로 복구 후 진행 2. 복구가 어려울 경우 심판이 판정</p> <p>④ 무승부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당일 재대국을 통해 승부를 결정한다. 재대국의 돌가리기 없이 흑/백을 유지하며, 제한시간은 각 대국자의 남은 시간으로 한다.</p> <p>⑤ 경기 성격(단체전 및 개인전) 및 감독 유/무, 계시기 사용 여부, 비디오판독 가능 여부에 따라 세부대회 규정을 제정하며 진행할 수 있다.</p>	<p>① 생략 ②~④ 세부내용 수정 ⑤ 내용 추가</p>